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902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액 등 증가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등의 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및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

나. 운용규모 : 2,875,087백만원(당초계획 대비 1,054,364백만원 증가)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B)	증 감 (C=B-A)
합 계	1,820,723	2,875,087	1,054,364
기 타 회 계 전 입 금	-	1,062,488	1,062,488
이 자 수 입	86,548	61,835	△24,713
예 치 금 회 수	1,734,175	1,750,764	16,589

< 지출계획 >

(단위: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B)	증 감 (C=B-A)	증 감 율 (D=C/A)
합 계	1,820,723	2,875,087	1,054,364	57.9
효 율 적 재 정 운 영	-	155,000	155,000	-
공사·공단 상환 지원	-	155,000	155,000	-
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	-	155,000	155,000	-
출 자 금	-	155,000	155,000	-
재 무 활 동	1,820,513	2,719,877	899,364	49.4
내 부 거 래 지 출	160,000	160,000	-	-
보 전 지 출	1,660,513	2,559,877	899,364	54.2
여 유 자 금 예 치	196,923	1,096,287	899,364	456.7
예 치 금	196,923	1,096,287	899,364	456.7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1,419,042	1,419,042	-	-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44,548	44,548	-	-
행 정 운 영 경 비	210	210	-	-

○ 수입계획 변경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위해 전입금 1,062,488백만원 증가
 - ▶ 전입금 : (당초) 0원 → (변경) 1,062,488백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3조 2,548억원) 중 법정 의무경비(1조 3,298억원)를 공제한 잔액(1조 9,250억원)의 55.2% 적립

- 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24,713백만원 감소
 - ▶ 이자수입 : (당초) 86,548백만원 → (변경) 61,835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6개월물)가 '22. 12월 4.74%에서 '23. 5월 3.79%로 0.95% 하락 등을 반영함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16,589백만원 증가
 - ▶ 예치금회수 : (당초) 1,734,175백만원 → (변경) 1,750,764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이 당초대비 155,000백만원 증가
 - ▶ 출자금 : (당초) 0백만원 → (변경) 155,00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예치금이 당초대비 899,364백만원 증가
 - ▶ 예치금 : (당초) 196,923백만원 → (변경) 1,096,287백만원

Ⅲ.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²⁾는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2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3조 2,548억 5,700만원)중 법정의무경비(1조 3,298억 8,200만원)를 정산한 잔액(1조 9,249억 7,500만원)의 55.2%에 해당하는 1조 624억 8,800만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계획중 **기타회계전입금**에 반영하고,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6개월물) 하락(22년 12월 4.74% → 23년 5월 3.79%)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 △247억 1,300만원을 **이자수입**에 반영하고 '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수입계획을 당초(1조 7,341억 7,500만원)보다 165억 8,900만원 증액한 1조 7,507억 6,400만원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 수입계획과 연동한 지출계획도 1조 543억 6,400만원을 증액 운용할 계획으로, ①정책사업인 **재무활동중 예치금**은 8,993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 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정책사업인 **효율적 재정운영**을 신설하여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 1,550억원을 순증하기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이나,

- 소요예산중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³⁾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동 출자금 편성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⁴⁾
- 동 지출계획 변경안중 편성요청된 출자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출자 동의안 승인여부와 연동하여 지출계획 변동여부 또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무활동**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1조 8,205억 1,300만원)보다 49.4%, 8,993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해 출자금을 순증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⁵⁾를 고려하면 출자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

3)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① 의안번호 : 888

② 안건명 :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③ 안건제출 : 2023. 5.30

5)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하고 있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정책사업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세부사업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증감률 (D=C/A)
지출합계	1,820,723	2,875,087	1,054,364	57.9
효율적재정운영	-	155,000	155,000	-
공사·공단상환지원	-	155,000	155,000	-
서울교통공사출자지원	-	155,000	155,000	-
출자금	-	155,000	155,000	-
재무활동	1,820,513	2,719,877	899,364	49.4
기타회계전출금	160,000	160,000	-	-
여유자금예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96,923	1,096,287	899,364	456.7
지방채차입금원금상환	1,419,042	1,419,042	-	-
지방채차입금이자상환	44,548	44,548	-	-
행정운영경비	210	210	-	-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3. 5.30) 재구성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